

2006 벤처 희망 프로젝트가 열린다

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와 기관, 금융권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. 벤처가 2006년을 희망찬 발걸음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지원정책들을 소개한다.

중 소 기 업 정 책 자 금 용 자 지 원 안 내

1. 공통사항

<용자 기준>

◎ **용자대상**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(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)

*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

◎ **용자제한**

-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(www.sbc.or.kr 메인 화면 우측 '참고자료' 참조)를 초과하는 기업(협동회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)

*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

① 업력 3년 미만 기업,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복구,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

②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

- 제조업의 경우 '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'에 의한 무등록 공장(협동회사업은 예외)

- 거래소 상장 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

-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(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)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 회사의 BBB 이상 등급인 우량 중소기업

- 전국은행연합회의 '신용정보관리규약'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(특별경영안정사업 중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은 예외)

- 자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(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 계약 체결업체는 용자지원대상으로 포함)
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외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

-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
•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
•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용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(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)

<용자지원 한도>

◎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의 용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5억원(수도권을 제외)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) 또는

매출액의 125%

* 구조개선사업(시설),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(시설), 창업자금(시설),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, 업력 3년 미만 기업인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

<가감점 및 우대사항>

◎ **가점부여 대상**

- 수출기업(수출신용장,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) *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부여

- 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'에 의한 벤처기업

- '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'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
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(광업, 제조업, 운송업, 건설업 외의 경우 10인 미만)

- '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'에 의한 여성기업

- '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'에 의한 장애인기업

- 근로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

- 부품·소재 생산 전문기업(부품·소재 매출비중이 50% 이상인 기업)

-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

-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(정보화혁신전문기업(TIMPs) 및 지원중소기업, 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,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, IT화 추진기업)

◎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적용

구분	B+이상	B	C+	C	C-	D+	D이하
적용 용자금리	4.0%	4.2%	4.4%	4.6%	4.8%	5.0%	5.2%
	(-0.4%p)	(-0.2%p)	-	(+0.2%p)	(+0.4%p)	(+0.6%p)	(+0.8%p)

- PL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
-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제청장 이상 수상기업
- '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'을 받은 기업(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자금에 한함)
-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
◎ 감점 부여대상

-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
-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용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패업체

〈용자 지원 방식〉

- ◎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신청·접수하여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
- 특별경영안정사업, 개발및특허기술사업, 수출금융 지원사업 등

- ◎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신청·접수하여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, 보증서부, 순수 신용대출
- 구조개선사업, 협동화사업 등

〈용자 신청·접수〉

- ◎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·접수
- ◎ 용자지원 시기 : 2006년 1월 2일~자금 소진 시 까지(월별 구분 접수, 매월 10일 신청 마감)
- *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<1. 공통사항>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자지원

2.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

◆ 구조개선자금

〈신청 대상〉

- ◎ 구조개선사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- 용자제의 대상 업종(www.sbc.or.kr 메인화면 우측 '참고자료' 참조)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- 다만, 제조업 전업을 30% 이상 업체 및 용자제의 대상 업종 업체 중 용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에 포함
- 구조개선사업 용자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(www.sbc.or.kr 메인화면 우측 '참고자료' 참조)

- 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
-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용자지원
-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용자지원. 다만,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용자지원

- ◎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: 지식기반서비스업(www.sbc.or.kr 메인화면 우측 '참고자료' 참조)을 영위하는 업체. 다만, 운전자금 용자지원 시 전업을 30% 이상(SW업종은 예외)

- ◎ 특별경영안정사업 :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

-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%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
-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
- 금융기관의 Work-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
- 전국은행연합회의 '신용정보관리규약'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,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

- 구조조정전문화사(조합), 창업투자회사(조합)가 투자한 기업
- 자산관리공사·금융기관·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
-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-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등
-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을 30% 이상 제조기업

〈용자 지원 범위〉

가. 구조개선사업

- ◎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
- ◎ 초기 가동비, 연구개발비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운전자금

나.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

- ◎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(임차, 건축, 매입)
- ◎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개발비,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

다. 특별경영 안정사업

- ◎ 재해, 원부자재 수급애로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〈용자 지원 조건〉

가. 구조개선사업

- ◎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연 4.4%(기준금리)
- ◎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 운전자금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- ◎ 대출한도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- ◎ 용자지원 방식
-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대출
- 담보부 또는 신용용자 방식으로 대출
- * 담보범위 : 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

나.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

- ◎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연 4.4%(기준금리)
- ◎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 운전자금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- ◎ 대출한도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연간 총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- ◎ 용자지원 방식 :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·접수·용자지원 대상 결정 후 담보부(부동산, 신용보증서등) 또는 순수신용

다. 특별경영 안정사업

- ◎ 대출금리(변동금리)
- 회생특례자금 연 7.9%, 재해복구자금 4.4%
- *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원부자재구입자금 연 4.4%(기준금리)
- ◎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- ◎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(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)
- ◎ 용자지원 방식 : 신용 및 신용보증서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(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
◆ 중소·벤처창업자금

〈신청 대상〉

- ◎ 창업을 준비 중인 자
- ◎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- 다만,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일

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

–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

* 신청제한 : 중소·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(www.sbc.or.kr 메인화면 우측 '참고자료' 참조)

〈용자 지원 범위〉

- ◎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, 응용 S/W, 중고시설, 임차보증금, 사업장 건축공사비(토지구입비 제외), 사업장매입, 경·공매, 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
- ◎ 연구개발비용,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,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

〈용자 지원 조건〉

- ◎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연 4.4%(기준금리)
- ◎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 /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◎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〈용자 지원 절차〉

- ◎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
 -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·접수와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(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- ◎ 신용보증부 대출
 -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병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용자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(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
◆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

〈신청 대상〉

- ◎ 제조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
-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, 중소기업청 선정 Inno-Biz 업체 보유기술
-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
- *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
-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
-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

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

〈용자 지원 범위〉

- ◎ 개발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설비 등
- ◎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 등

〈용자 지원 조건〉

- ◎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연 4.4%(기준금리)
- ◎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◎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원(운전자금은 3억원)

〈용자 지원 절차〉

- ◎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순수 신용대출
 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신청·접수 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용자지원 결정
- ◎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대출
 -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병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용자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

◆ 수출금융 지원자금

〈신청 대상〉

- ◎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

〈용자 지원 범위〉

- ◎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)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

〈용자 지원 조건〉

- ◎ 대출금리 : 연 4.4%(기준금리 ;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)
- ◎ 대출기간 : 180일 이내
 - 실적기준 포괄금융 :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
 -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: 수출품 선적 후 수출한 어음 매입 시 정산
- ◎ 대출한도 : 업체당 10억원
 -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: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(최대 10억원)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% 이내
 - 실적기준 포괄금융 :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의 1/2 이내로 5억원 한도

◎ 용자지원 방식

–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 방식으로 용자

◆ 협동화 자금

〈신청 대상〉

- ◎ 중소·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(www.sbc.or.kr 메인화면 우측 '참고자료' 참조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
- *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(예정)기업인 경우 우대(시범단지 : 창원, 구미, 울산, 반월·시화, 광주, 원주, 군산)
- *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
- *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(창업초기기업)는 참가업체 수의 1/2 범위 이내로 제한(단,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않음)

〈용자 지원 범위〉

- ◎ 시설자금 : 건물·부지매입비, 임차보증금,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
- ◎ 운전자금 :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
- ◎ 협업화자금 : 판로개척, 원자재 구매, 기술개발,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

〈용자 지원 조건〉

- ◎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연 4.4%(기준금리)
- ◎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포함)
 -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◎ 대출한도
 - 시설자금 : 추진주체는 50억원,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
 - 운전자금 : 추진주체는 10억원,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
 - 협업화자금 : 추진주체는 30억원,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

◆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

〈신청 대상〉

- ◎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◎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
* 지원제외 대상 :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
〈용자 지원 범위〉

◎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〈용자 지원 조건〉

◎ 대출금리 : 연 5.4%(변동금리,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)
 ◎ 대출한도 : 5천만원

◎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 ◎ 상환방식
 -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
 ◎ 대출취급은행
 - 국민·기업·신한·우리·외환·조흥·한국씨티(한미)·하나·부산·대구·광주·전북·경남·제일·제주은행, 농협중앙회

〈용자 지원 절차〉

◎ 신청·접수
 - 순수신용·담보부 대출 : 협약은행
 - 보증서부 대출 : 지역신용보증재단
 ◎ 신용보증서 발급 : 지역신용보증재단
 -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,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
 ◎ 대출
 -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,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
 * 문의처 :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

중 소 기 업 지 원 기 R & D 사 업

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‘산-산(産-産)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’ (127억원) 및 ‘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’ (20억원) 등에 총 147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. 기술개발자금은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·무이자로 기술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,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이다.

사업명	사업 내용	2006년 예산 및 계획	전문기관/지원한도
산산협력 공동개발	기업협동형 기술개발	• 동종·이업종 간 기술융합화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지원 - 과학기술부(산기협)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	62억원(60개 과제) ◎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◎ 소요비용 75% - 2년, 3억원 한도
	비창업기업 기술개발 (신규)	•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창업성공을 제고 • 비 창업기업 간 컨소시엄 - 비당 1개 컨소시엄 신청(비센터장 추천)	20억원(20개 과제) ◎ 정보화경영원 ◎ 소요비용 75% - 2년, 3억원 한도
	중소기업 기술연구회	• 중소기업이 조합, 단체, 대학 등과 구성된 기술연구회를 통해 신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별 중간조직 육성 - 대표회원(조합 등) + 중소기업(2개이상)이 민법상 조합구성	45억원(33과제) ◎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◎ 소요비용 75% - 2년, 4억원 한도
신기술사업화 디자인개발 (신규)	• 개발기술에 디자인개발을 연계지원하여, 독자적인 신제품개발 및 조기 사업화 촉진 - 대상 : 중기청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(2003년 1월 이후) - 분야 : 개발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시장조사, 디자인 시안, 목업 등 제품디자인 개발	20억원(100과제) ◎ 디자인진흥원 ◎ 소요비용 75% - 6월, 5천만원 한도	

- 접수기간 : 2006년 1월 23일(월)~2월 22일(수)
- 사업신청 방법 : 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’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

부 처 · 기 관 별 처 벤 처 지 원 정 책

부처·기관명	정책 내용
산업자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'에 60억 지원(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인력비를 1년간 석사 1440만원, 박사 1800만원씩 지원) - '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'에 100억원 투입(2500명 현장연수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) - 5천억원 규모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결성(2009년까지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투자)
과학기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용자사업'에 의거 기술담보용자금 530억 지원(5년 이내 연리 3.92%)
기술신용보증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공급액 10조원 중 6조 7천억원을 혁신형기업에 우선 지원(보증비율은 2005년 60% 수준에서 2008년까지 80% 수준으로 확대) -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운용 특례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대보증 입보 완전 면제 : 1인 자본 30% 미만 기업으로 기보평가 신용등급 AAA등급(외부감사기업은 AA등급) 이상 또는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· 기타 입보 면제(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를 제외한 자의 입보) : 신용등급 A등급,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
신용보증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한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(추가 보증여력은 혁신형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사용) - 최고 보증료율 2.0%에서 3.0%로 인상(보증이용기간 5년 초과 혹은 보증금액 15억원 초과 기업은 0.1%포인트 가산 보증료 부과) - 기업대출금의 85%인 보증비율(보증기간 10년 이하 기준)을 50~90%까지 차등 적용 - 혁신형중소기업 중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에 보증료 0.2% 포인트 차감 우대
한국산업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형기업 자금공급 규모 2조 5천억원으로 확대(작년대비 1조원 증가) - '혁신형중소기업육성펀드' 1조원 신설 - 1천억원 규모 '기술력 평가대출' 실시(업체당 시설 50억원, 운영 20억원 한도) - '초기 기술사업화기업 투자제도' 신설, 300억원 신규출자 및 투자 - 창업 5년 이내 혁신형기업 직접투자 규모 700억원으로 확대 - 중소·벤처기업 노후설비 교체용 특별시설자금 1천억원 설정(별도 담보 없이 소요자금 100%까지 지원) - 대출금 특별유예제도(일시적 자금난 겪는 기업이 이자만 내고 원금을 6개월~1년 상환유예하는 제도) 올해까지 연장

● 2006년에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

1. 중소기업 지정 요건 강화 :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과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, 상호출자, 우회출자 등에 의한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.
2. 벤처기업 요건 개편 :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캐피탈협회, 기술신용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뀌었다.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됐고, 기술평가보증, 대출기업 유형은 신설됐다. 기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요건도 강화됐다.
3. 계약능력심사제 도입 :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입찰은 조달청의 적격 심사나 최저가 낙찰제 대신 계약이행능력심사로 결정된다.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인 부실제품 납품, 업체의 수익 감소 등을 막기 위해서다.
4.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의무화 : 공기밸브 등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11개 품목의 공공기관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.
5.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제도 운영 : 정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% 이상을 중소기업의 제품과 용역 등으로 구매해야 한다. 또 중소기업의 제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는 금액의 5%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.